

안양대학교 대학원 학칙

제 4 장 학업성적

제23조(학업성적) ①학업성적은 교과목 학점과 연구학점으로 분류하고 각 경우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점수는 소수점 이하에서 절삭한다.

1. 교과목 학점

등급	평점	점수
A+	4.5	95~100
A	4.0	90~94
B+	3.5	85~89
B	3.0	80~84
C+	2.5	75~79
C	2.0	70~74
F	0.0	0

2. 연구학점

「가」 : 통과한 경우.

「부」 : 통과하지 못한 경우.

「보류」 : 보류상태를 의미한다.

② 「보류」는 교과목 학점 및 연구학점에 부과할 수 있으나, 당해 학기 수업 종료 후 4주 이내에 성적을 제출하지 않으면 교과목 학점은 F로, 연구학점은 「부」로 처리한다.

③ 취득학점의 인정은 각 과목당 성적등급 C(평점 2.0) 이상으로 하고, 수료 및 졸업에 필요한 취득학점의 인정은 총 성적 평점평균 B(평점 3.0) 이상으로 한다.

제24조(수업출석) 학생은 수강 신청한 전 과목의 수업에 출석하여야 하며, 각 과목별 결석 일수가 소정의 허용한계(전 수업시간의 1/4 이내)를 초과할 때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.

제25조(학점인정 및 학점교류) ①타 대학원으로부터 편입한 자는 해당 대학원 학사 운영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

의 1/2까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[개정 2013. 3. 1]

②본 대학원과 학점교류협정을 맺고 있는 타 대학원(국내외 대학원 및 다른 대학 대학원)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1/2까지 해당 대학원 학사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.

③신학대학원은 제①항 및 ②항에 해당하고, 전국신학대학원 협의회 회원교의 대학원 석사과정 학점교환제 실시 협약에 따라 회원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